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56
----------	---------

발의연월일: 2020년 6월 일

발 의 자: 윤유선, 경기문, 김성한, 이충숙
최동철, 이충현, 신낙형, 송순호
이의걸, 정정희, 송영섭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모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아동·청소년, 사망한 부모의 채무, 법률지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지원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대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사. 시행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 나. 협조부서: 교육청소년과
- 다. 입법예고: 2020. 6. 5. ~ 2020. 6. 9.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지원을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20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